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81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2. 23.

발 의 자 : 이 영 · 송언석 · 이채익
김도읍 · 최춘식 · 조명희
추경호 · 양금희 · 김영식
태영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정당이 당내경선 등을 하거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만 가상번호를 제공받고 있어 알뜰폰(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전기통신사업자) 사용자 1천만여명이 당내경선 등이나 여론조사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이동통신사업자”에 ‘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38조에 따라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전기통신사업자’를 포함하도록 하여 당내경선 등이나 여론조사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57조의8제1항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이동통신사업자”를 “이동통신사업자(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38조에 따라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7조의8(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) ①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를 경유하여 <u>이동통신사업자에게</u>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(이하 “휴대전화 가상번호”라 한다)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(이하 “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”라 한다)으로 요청할 수 있다.	제57조의8(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이동통신사업자(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38조에 따라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⑬ (생략)	② ~ ⑬ (현행과 같음)